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1509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15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8 선고 2013가소23822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도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소관 : 안양지점)

변론 종결 2015. 6. 4.

판결 선고 2015. 7. 9.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8. 선고 2013가소23822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금영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영건설'이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화홍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592,190,610원, 계약기간 2012. 12. 31.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에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나. 기성금사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4'에 따른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1-나-2)'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1절 하도급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환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원고는 2013. 1. 2.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금영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금액 592,190,610원 중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185,103,076원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를 하였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 4. 2.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환)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 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금영건설은 2012. 12. 31. 피고와 보증금액 151,480,000원, 보증기간 2013. 1. 9.부터 2013. 5. 31.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여 2013. 1. 10. 원고로부터 선급금 14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선급금보증약관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이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가 계약이행기일 이내에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금해당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미지급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인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원고는 금영건설에 2013. 2. 8. 1월 기성공사비 중 노무비로 28,784,78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금영건설은 2013. 3. 4. 2월분 기성공사비 중 노무비로 28,917,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자 2013. 3. 28.에 18,532,000원을, 2013. 4. 2. 18,332,000원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4. 12. 노무자 개개인의 계좌로 18,332,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금영건설이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준공기한인 2013. 4. 1.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4. 2.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와 금영건설, 피고는 2013. 4. 5. 금영건설이 시공한 기성금액을 66,401,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정산 선급잔액 128,715,780원[= 선급금 148,000,000원 - (타절기성확정액 66,401,000원 - 1월 노무비 28,784,780원 ~ 2월 노무비 18,332,000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월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38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영건설에 지급한 선급금에서 원고가 금영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금영건설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2월 노무비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졌을 뿐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2013. 4. 22. 당시 이미 원고의 금영건설에 대한 노무비 지급채무가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와 금영건설의 도급계약에서 노무비는 선급금의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금영건설도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선급금의 반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월 노무비 18,332,000원도 원고가 금영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32,000원 상당의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이후인 2013. 4. 22. 원고가 금영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2월 노무비 18,332,000원을 원고에 의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타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기성금으로서 미정산 선급금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총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총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또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선급금의 총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하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예외적 정산 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이전에 금영건설로부터 2월 노무비 청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금영건설 혹은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영건설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노무비를 선급금의 총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 4. 2.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2013. 4. 5. 기성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를 기준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총당되고 금영건설은 나머지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 총당 대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의 해석상 원고가 금영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일 뿐 선급금을 반환할 경우 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금영건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 가중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타절된 2013. 4. 5.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금영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중 37,616,220원은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한 1월 노무비 28,784,780원을 반영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37,616,220원(= 66,401,000원 - 28,784,780원)에 총당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선급금 상당액 128,715,780원(= 선급금 148,000,000원 - 37,616,220원)을 반환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광

판사최혜승

판사박수현